

교수 업적 평가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1997. 05. 27.
4차 개정 2022. 04.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심의하여 교수업적평가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본교의 교수업적 평가를 합리적이고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교수의 연구와 학문적 수준을 높임은 물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의 발전과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정관, 학칙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위원회 및 구성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의 기본원칙 및 운영방향 설정
2. 제도개선 계획 수립
3. 삭제 (2007.12.3)
4.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교무연구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3., 2019.06.25., **2022.04.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9.06.25, **2022.04.2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전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이 위원회는 **교무연구처**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 과 서기1인을 둔다. (개정 2019.06.25, **2022.04.20**)

제3장 운영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및 자료제출 의무)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또는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307, 2007.12.4)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